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유지 1153.1-1382 (전화번호 3252)		전결 중	조/함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중			
시행일자	83. 9. 19		결재 1983. 9. 19 환경국장	
보존연한				
보조기관	환경복지국장	전결	83. 9. 19	법무담당관
	농지과장		고시제 484 호	심사관
	농지보전계장			
기안책임자	83. 9.		조	
경유수신참조	각안참조	발신	시중	통계 검열 1983. 9. 19 서울특별시 문서통계관
제목	지정보호수 일부해제 (제 1 안)			
수신: 내 부결재				
제 목: 같은 건				
1. 공복 1153.1 ~ 1747 (82. 11. 8) 호와 관련				
됩니다				
2. 위호로 당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145개는 1PP주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여 동역 구분 부류 재지정 하였는바				
3. 동지정보호수중 다음과 같이 일부 수목이 고사 되며 쇠 이관을 위해 할부 아니라 낙지, 절간 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 되므로 산림법 제 69조 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해제 조치 하오니 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수종	소재지	수량	해제 수량	종격	자형번호	해제 사유	소유	비고
계 (2종)	개개소			사나무 1 동나무 2				
은행나무	영동. 단산 110	500	1	사나무	1-22	호고수로 인한 피해 이전지해로 인 및 위해방지	시유	지정 2주중 1주해제
느티나무	강동. 장영5 27	300	1	구나무	1-17-46	"	공유	
느티나무	서대문. 홍제 81-2	200	1	동나무	1-9-14 -22	"	사유	
느티나무	강서. 외발산 291-1	500	1	동나무	1-11-18 -27	"	사유	
은행나무	강남. 우면 201	800	1	동나무	1-16-15 -36	"	사유	
느티나무	동대문. 옥 171-1	100 ~450	2	바늘나무	1-5-26 -16-7	"	공유	지정 5주중 2주해제
느티나무	강남. 장원 137-20	100	1	바늘나무	1-16-8 -10-26	"	사유	지정 10주중 1주해제

- 첨부: 1. 고시문 (안) 1부
2. 해제 대상목 광경사진 1부 끝

제 2안

수신: 수서지 관공  결과
참조: 공원녹지과 2부
제목: 갈 우진

1. 관련 문서

동대문 공적 1153.1 ~ 10P (83. 9. 8)

서대문 ^{확정} 1153.1 ~ 135P (83. 5. 25)

강서 1153.1 ~ 10P (83. 5. P)

영등포 " 1153.1 ~ 623 (83. 8. 10)

감암 " 1153.1 ~ 2380 (83. 7. 2P)

" " 1153.1 ~ 2381 (83. 7. 2P)

강동 " 1152 ~ 170P (83. 6. 1) 조차

관련 성

2. 위로로 해제 요청한 지정 보호수에 대하여

별칭 고시문 (안) 과 같이 그 지정을 해제 하였고
통보하니 과묵으로 인한 도시미관 자해 요소 및 화재
예방에 대한 제반 필요 조치를 취하고 보호수 표시문
지체없이 회수하여 귀직 책임하에 보관토록 할 것

3. 동대문구 청양리동 산 1-135 소재 지정

보호수 느티나무 (지정번호 1-5-14 구나무) 는 현재
생육 상태에 맞지않은 개목 조치 할 것이니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것

첨부 : 고시문 (안) 1부 끝

수신처 : 동대문, 서대문, 강서, 영등포, 감암, 강동 구청장

(제 3번)

수신 : 수신처 장로

제출 : 김우진

1. 공복 1153.1~1747 (82. 11. 8) 조와 관련
입니다.

2. 위주로 품격구분 분류하여 재지정한 보호수종
별칭내역의 보호수가 과사 되어 산림법 제 69조 규정
에 의거 그 지정을 해제 하시기 통보하니 도시 미관
저해 요소 및 위해 발생되는 원의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서본 (안) 1부 끝

수신처 : 강릉시 위원회 201 위장산 외 4인

(제 4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참조 : 공역녹지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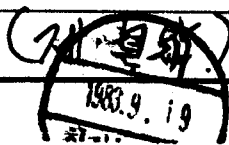
제목 : 같은 문건

1. 공복 1153.1 - 1747 (82. 11. 8) 조와 관련임

2. 위주로 품격구분 분류하여 재지정한 보호수종
별칭내역의 보호수가 과사 되어 산림법 제 69조 규정에
의거 그 지정을 해제 하시기 통보하니 업무 수행에 참고
도록 하겠

첨부 : 고서본 (안) 1부 끝

수신처 : 종로, 중구, 동산, 성동, 성북, 도봉, 은평, 마포, 구로
등각, 관악구청장, 녹지사양소장



행정처장

수신: 공보관 (108)

발신: 환경관리국장

제목: 시보게재 의뢰

83. 9.

당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종 일부
수목이 고사되어 산림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별첨 고사목 (안) 와 같이 그지점을 해제 하였기 통보
하오니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사목 (안) 사본 1부. 끝.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보호수 지정 해제

법무심사	1983. 7. 13	제 246 호
담당자	법제처장	법무담당관

산림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한 다음
 수목을 보호수 지정 해제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3. 9.

서울특별시장

보호수 지정 해제 수목 내역

지정번호	지정품격	수종	소재지	소유	해제사유
1-22호	시나무	은행나무 2주 중 1주	영등포구 당산동 110	시유	자연고사
1-17-46호	구나무	느티나무	강동구 잠실5동 27	공유	"
1-9-14-22 호	동나무	"	서대문구 홍제동 81-2	사유	"
1-11-18- 27호	"	"	강서구 외발산동 231-1	"	"
1-16-15- 36호	"	은행나무	강남구 우면동 201	"	"
1-5-36- 16-7호	마을나무	느티나무 5주 중 2주	동대문구 목1동 171-1	공유	"
1-16-8- 10-26호	"	느티나무 10주 중 2주	강남구 잠원동 137-20	시유	"